비밀유지계약서

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에 본점소재지의 주소를 두고 있는 ㈜아이피에스 (이하 "갑"이라 한다) 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3-18 번지 B1 에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두고 있는 비디오아트 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"갑"이 "을"에게 비디오 아트는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9 년 4월 6 일자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비밀정보)

본 계약에서의 비밀정보란 본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"본 계약의 목적"에 따라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(이하 "공개당사자"라 한다)가 상대방 당사자(이하 "수신당사자"라 한다)에게 제공하거나 "공개당사자" 혹은 "공개당사자"의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로서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"수신당사자"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. 상기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들을 포함한다.

- 1. 서면,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영업비밀, 발명, 아이디어, 프로세스, 컴퓨터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, 공식, 데이터, 프로그램, 도면, 설계, 실험결과, 샘플, 사양서, 가격표, 생산비용, 기타 저작물, 노하우, 개량, 발견, 개발, 디자인, 및 테크닉
- 2. 제품,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계획, 마케팅 및 비즈니스 계획, 예산안, 재무제표, 계약, 가격, 공급자, 및 고객에 관한 정보.
 - 3. "공개당사자"의 고용자, 계약자, 및 기타 에이전트의 능력 및 보수에 관한 정보.
- 4. "공개당사자" 및 "수신당사자" 또는 제 3 자 간의 비즈니스 검토, 협상, 또는 계약의 존재.
 - 5. "갑"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.

제 2 조 (비밀유지 의무)

양 당사자는 "공개당사자"가 제공한 비밀정보가 "공개당사자"의 소유임과 공개 시 "공개당사자"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합의한다. 다만, 제 3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"갑" 계약 대리인

1/7

"을" 계약 대리인

서명

MB 0/ /251

- 1. 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 - 2. "수신당사자"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.
- 3. "수신당사자"는 허락된 목적범위 외의 목적으로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4. "수신당사자"는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및 고용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본 계약과 내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본 계약에 구속되는 자들에 한해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의 접근을 제한한다.
- 5. 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를 분실하거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동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"공개당사자"에게 통지한다.
- 6. "공개당사자"는 "수신당사자"에게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지아니한다.
- 7. "수신당사자"는 비밀정보를 실수로 또는 고의로 누출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.

제 3 조 (비밀유지 의무의 예외)

- 1. 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,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 - (1)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"수신당사자"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
 - (2)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"수신당사자"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
 - (3)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"수신당사자"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
 - (4)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"수신당사자"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
 - (5) 비밀정보를 제공한 "공개당사자"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

"갑" 계약 대리인

2/7

"읔" 계약 대리인

서명

MB 6/ 1881

- (6)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.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"공개당사자"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"공개당사자"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. "수신당사자"는 "본 계약의 목적"을 위하여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를 제 3 자(이하 "제 2 수신당사자"라 한다)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"공개당사자"의 서면에 의한 동의와 "수신당사자" 및 "제 2 수신당사자"간의 비밀유지계약체결 후에만 "수신당사자"는 "제 2 수신당사자"에게 동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때 "제 2 수신당사자"는 본 계약이 정하는 "수신당사자"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.

제 4 조 (비밀의 표시)

- 1. "공개당사자"가 "수신당사자"에게 서면이나 서류(이하 "서류 등"이라 한다)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"공개당사자"는 동 정보가 비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"서류 등"에 "대외비", "confidential", 또는 "비밀"(이하 "비밀표시"라 한다) 중 1가지 이상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.
- 2. "공개당사자"가 "수신당사자"에게 구두나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"공개당사자"의 시설,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등 "서류 등" 이외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"공개당사자"는 제공 시 "수신당사자"에게 본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공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"비밀표시" 중 1가지 이상의 문구를 표기한 서면으로 "수신당사자"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본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"비밀표시" 중 1 가지 이상의 문구가 표기되지 않거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는 비밀정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 5 조 (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)

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"본 계약의 목적"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어떠한 형태로든 재생산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.

제 6 조 (자료의 반환)

"갑"계약 대리인

3 / 7

"을" 계약 대리인

서명

서명 이 / / 성기

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"공개당사자"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, 장비, 서류, 샘플,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"공개당사자"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"공개당사자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권리 의무의 양도)

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.

제 8 조 (권리의 부존재 등)

본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"공개당사자"의 소유에 속하며,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"수신당사자"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체결, 제조물 의 판매나 구입,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내부규정의 준수 등)

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, 상대방 당사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지적재산권의 소유)

"공개당사자"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"본 계약의 목적"에 따라 "수신당사자"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허, 노하우,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, "수신당사자"는 즉시 "공개당사자"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 서면으로 이를 정한다.

제 11 조 (계약의 분리 가능)

"갑" 계약 대리인

4/7

"을"계약 대리인

서명

서명 이 / / 상의

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,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,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(보증)

"공개당사자"는 "수신당사자"에 대하여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나 비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상품성 등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계약의 수정)

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 14 조 (계약의 해제, 해지)

본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1. 계약서상의 각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정이 가능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.
- 2. 중요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, 경매, 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.
- 3.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.
- 4. 조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,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.
- 5.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허가취소, 고발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진 폐업, 휴업하는 경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.

"갑" 계약 대리인

5/7

"을"계약 대리인

서명

MB 0/ 1991

- 6. 자신이 발행 또는 인수하거나, 자신의 계산으로 제 3 자의 명의로 발행하고 자신이 보증 또는 배서한 어음·수표의 부도의 경우.
 - 7.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.
- 8. 기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.

제 15 조 (계약 기간)

- 1.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. 단, 제 5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종료 후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의 체결 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"공개당사자"가 "수신당사자"에게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도 본 계약의 규정에 구속된다.
- 3.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에 대한 비공개, 비사용 의무는 본 계약이 제 14 조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.

제 16 조 (손해배상 책임)

- 1.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해진 확약사항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,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제 3 조 제 2 항에 의하여 "수신당사자"가 "제 2 수신당사자"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후에 "제 2 수신당사자가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"제 2 수신당사자"의 의무를 위반하여 "공개당사자"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"수신당사자"는 "공개당사자"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분쟁의 해결, 준거법 등)

"갑" 계약 대리인

6/7

"을"계약 대리인

서명

MB 0/ 1/5/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

- 2.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 및 법규에 의하여 준거, 지배, 해석 및 정의된다.
 - 3. 본 계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및 전세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.

"갑":㈜아이피에스

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

Solar 사업 본부장 김 광 호 전무 (Sign)

"을" : 비디오아트

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3-18 B1

대표 김 인 숙 (인)

MX101: 7501 pp 0/1692

"갑"계약 대리인

.

7 / 7 "을" 계약 대리인

MB D/ 12 81